

대 통 령 령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명 박 인

2010년 12월 21일

국 무 총 리 김 향 식

국 무 위 원
문 화 체 육 유 인 촌
관 광 부 장 관

●대통령령 제22541호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나.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(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)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규제의 존속기간) 청소년게임제공업자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에 관한 제16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날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환전이 여전히 성행하여 불법적인 게임 이용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,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의 제공이 가능한 게임물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하도록 한 규제를 2년간 연장함으로써, 경품의 환전행위 등 불법적인 게임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부 령 령

●문화체육관광부령 제70호

경륜·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0년 12월 21일

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인

경륜·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